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도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로 시·군에
부담금 전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사업 등 7개의 국고보조사업⁹⁾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지원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아래 [표 1]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명	기준보조율(%)		비고
	국비	지방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지원사업	80	2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	5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	50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50(65)	50(35 ¹⁰⁾)	차등보조율 적용 ¹¹⁾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65)	50(35)	
보육돌봄서비스 제공사업 ¹²⁾	50	50	차등보조율 적용(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어린이집 지원사업	50	50	

9)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원 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을 [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사업명	기준부담률(%)		비고
	도비	시(군)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지원사업	70(80)	30(2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	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	0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50	50	차등보조율 적용 ¹³⁾ (사회보장비 지수가 25이상 이고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경우 도비:시·군비 = 70:3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	50	
보육돌봄서비스 제공사업	50	50	
어린이집 지원사업	50	50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5. 2. 27.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반드시 준수하고 금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기준부담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료급여 지원 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부담률에 맞게 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도의 법정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작게는 4%p, 많게는 50%p만큼 시·군에 더 높게 책정하고 증가된 부담비율

10)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기준보조율이 50에서 65로 상향 조정됨

11) 강원도의 경우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가 해당됨

12) 2016년부터 보육돌봄서비스 제공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변경됨

13) 강원도의 경우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가 해당됨

만큼의 부담금을 시·군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정부합동감사 감사기간(2016. 9. 20.~10. 7.) 중에 최근 4년간(2013년 ~ 2016년) 위 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집행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도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1,389억여 원(2013년 420억, 2014년 296억, 2015년 312억, 2016년 360억)을 춘천시 등 18개 시·군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가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실제 예산편성·집행된 부담금 ¹⁴⁾			법정 기준부담률에 따른 부담금			도부담금 사군 전액 (=②-①)
		국비	도비①	시·군비	국비	도비②	시·군비	
합계	1,857,287	1,290,135	204,752	362,399	1,290,136	343,691	223,763	138,940
<2013년> 계	483,685	307,851	60,718	115,116	307,852	102,737	73,383	42,020
의료급여	219,522	175,624	21,858	22,040	175,624	32,063	11,835	10,205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1,745	5,872	1,041	4,831	5,872	5,872	0	4,831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6,511	3,257	976	2,278	3,257	3,254	0	2,278
영유아보육료	154,133	77,211	23,077	53,846	77,211	38,605	38,605	15,529
가정양육수당	40,000	20,000	6,000	14,000	20,000	10,000	10,000	4,000
보육돌봄서비스	41,770	20,885	6,265	14,619	20,885	10,442	10,442	4,177
어린이집 지원	10,004	5,002	1,501	3,502	5,003	2,501	2,501	1,000
<2014년> 계	456,014	321,308	49,063	85,642	321,308	78,694	56,014	29,632
의료급여	222,250	177,816	22,130	22,304	177,816	32,466	11,968	10,336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2,998	1,499	300	1,199	1,499	1,499	0	1,199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364	681	205	478	681	683	0	478
영유아보육료	132,900	86,385	13,955	32,560	86,385	23,258	23,258	9,303
가정양육수당	44,511	28,932	4,674	10,905	28,932	7,789	7,789	3,116
보육돌봄서비스	42,959	21,479	6,444	15,035	21,479	10,741	10,741	4,297
어린이집 지원	9,032	4,516	1,355	3,161	4,516	2,258	2,258	903
<2015년> 계	456,066	320,163	49,572	86,331	320,163	80,820	55,086	31,247
의료급여	223,518	178,833	22,370	22,315	178,833	32,615	12,070	10,245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3,254	1,627	325	1,301	1,627	1,627	0	1,301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7,122	3,560	1,068	2,494	3,560	3,562	0	2,494
영유아보육료	123,860	80,509	13,005	30,346	80,509	21,676	21,676	8,671
가정양육수당	43,186	28,071	4,535	10,581	28,071	7,558	7,558	3,023
보육돌봄서비스	45,412	22,706	6,812	15,894	22,706	11,353	11,353	4,541
어린이집 지원	9,714	4,857	1,457	3,400	4,857	2,429	2,429	972
<2016년> 계	461,522	340,813	45,399	75,310	340,813	81,440	39,280	36,041

의료급여	233,691	186,964	23,275	23,452	186,964	34,101	12,630	10,826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530	765	153	612	765	765	0	612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5,547	2,774	834	1,939	2,774	2,773	0	1,939
영유아보육료	121,857	88,424	10,033	23,400	88,424	21,325	12,109	11,292
가정양육수당	42,715	30,610	3,632	8,473	30,610	7,475	4,631	3,843
보육교직원 인건비·운영지원	56,182	31,276	7,472	17,434	31,276	15,001	9,910	7,529

※ 자료 : 강원도 제출자료 재작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라고 강원도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14) 법정 기준부담률과 다르게 실제 예산에 편성·집행한 부담금을 말하고 자료 작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국고보조금 결산(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는 감사일 현재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